

주식회사충북해외개척공사설치조례(안)

제안년월일 1996. 10.

제안자 기획경제위원장

1. 제안이유

WTO체제 출범으로 국내시장이 전면 개방되어짐에 충북도의 산업을 보호하고 농·수·축산물과 공산품의 수출입업무 및 국내·외 시장개척사업, 해외투자부문사업, 관광과 관련한 사업을 운영하여 도민의 소득증대와 지역개발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골자

가. 회사는 주식회사로 하며, 그 명칭은 주식회사충북해외개척공사로함. (안 제2조)

나. 수권자본금은 100억원으로 하고 설립자본금은 수권자본금의 4분의 1이상으로 함.
(안 제5조)

다. 회사의 사업 (안 제5조)

- ① 농·수·축·임산물과 공산품의 수출입 및 대행업
- ② 국내 및 해외기업의 대리업
- ③ 무역거래 알선 및 중개업
- ④ 국내·외 시장개척
- ⑤ 기타 도민소득증대 및 무역진흥을 위한 부대사업
- ⑥ 관광알선, 투자등

라.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에서 부담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사업 범위를 정함. (안 제8조)

- ① 지방자치단체(도, 시·군)가 요청한 사업으로서 회사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㉔ 회사설립 목적에 의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회사의 부담이 곤란한 사항으로 지방비 부담이 불가피한 경비

마. 도지사는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검사와 지도를 할 수 있고 보고 및 검사결과에 대하여는 도의회에 보고하도록 함 (안 제11조)

바. 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을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3조)

□ 근거법령

- 지방공기업법 제79조의 2

- 상법

주식회사충북해외개척공사설치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79조의2 및 “상법”에 의거 해외개척공사(이하 “회사”라 한다)을 설립하여 농수축산물과 공산품의 수출입업무 및 국내·외시장개척사업, 해외투자부문사업, 관광과 관련한 사업을 하므로 도민의 소득증대는 물론 지역개발 또는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사의 종류 및 명칭) 회사는 주식회사로 하며, 그 명칭은 “주식회사 충북 해외개척공사”라 한다.

제3조(사무소) ①회사의 주된 사무소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회사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회의결로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정관) ①회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상호
3.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4. 1주의 금액
5.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6. 본점의 소재지
7.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8. 발기인의 성명과 주소

②회사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주주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5조(자본금) ①수권자본금은 100억원으로 하고 설립자본금은 수권자본금의 4분의 1이상으로 하되, 정관으로 정한다.

②충청북도 출자는 시·군을 포함하여 설립자본금의 2분의 1만으로 한다.

제6조(사업) 회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농·수·축·임산물과 공산품의 수출입 및 대행업
2. 수출입 정보제공 및 무역에 관한 상담
3. 국내 및 해외기업의 대리업
4. 각급 기관·단체로부터 위탁받은 무역업 및 부대업
5. 무역거래 알선 및 중개업
6. 수출입 상품의 운송, 보관, 통관 및 하역업
7. 제1호이외의 수출입 상품의 가공, 수집, 제조 및 판매업
8. 국내·외시장 개척
9. 국내·외 상설전시장 및 판매장 설치 운영
10. 기타 도민소득증대 및 무역진흥을 위한 부대사업
11. 해외투자
12. 관광알선, 투자
13. 위 각호와 관련된 업체의 부대사업

제7조(주주권행사) 도, 시·군이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시장·군수가 행사한다. 다만,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지방비의 부담) ①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

사가 시행하는 다음 각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에서 부담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도, 시·군)가 요청한 사업으로서 회사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2. 회사설립 목적에 의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회사의 부담이 곤란한 사항으로 지방비 부담이 불가피한 경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소요비용에 관하여는 회사와 관계 자치단체가 협의하여 따로 정한다.

제9조(대행사업의 수행) ①회사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위탁계약에 의한다.

②회사는 제1항의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회의 의결로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사업년도) 회사의 사업년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회계년도에 준한다.

제11조(보고 및 검사등) ①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회사의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검사와 지도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보고 및 검사결과에 대하여는 자치단체의 장은 각각 도, 시·군의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권한의 위탁) ①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회사의 설

립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권한의 일부를 지방자치법 제9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에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시장·군수가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3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도지사는 대표이사 사장의 요청에 의하거나 회사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회사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과 “지방공기업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